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2019-71호
2019년4월16일(화)

여수시보

시정지표

- | | |
|---------|---------|
| 1. 시민공감 | 1. 감동시정 |
| 1. 균형있는 | 1. 상생경제 |
| 1. 사람중심 | 1. 나눔복지 |
| 1. 품격있는 | 1. 문화관광 |
| 1. 살기좋은 | 1. 정주환경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9-993호 도로지정공고[소라면 덕양리 1072-7번지] /3
- 여수시 공고 제2019-1004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5
- [별표1] 열람공고 토지조서(문수 2단계)
- [별표1] 열람공고 물건조서(문수 2단계)
- 여수시 공고 제2019-1010호 여수형 청년 마을기업가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8

【기 타】

- 여수시 조례 제2019-1393호 여수시립박물관과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0
- 여수시 조례 제2019-1394호 여수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35
- 여수시 조례 제2019-1395호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38
- 여수시 조례 제2019-1396호 여수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4
- 여수시 조례 제2019-1397호 여수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52
- 여수시 조례 제2019-1398호 여수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 여수시 조례 제2019-1399호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68
- 여수시 조례 제2019-1400호 여수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회								
람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72-8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계		12.5m	2.3m	28㎡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소라면 덕양리	1072-7번지	12.5m	2.3m	28㎡	"	
이 하 빈 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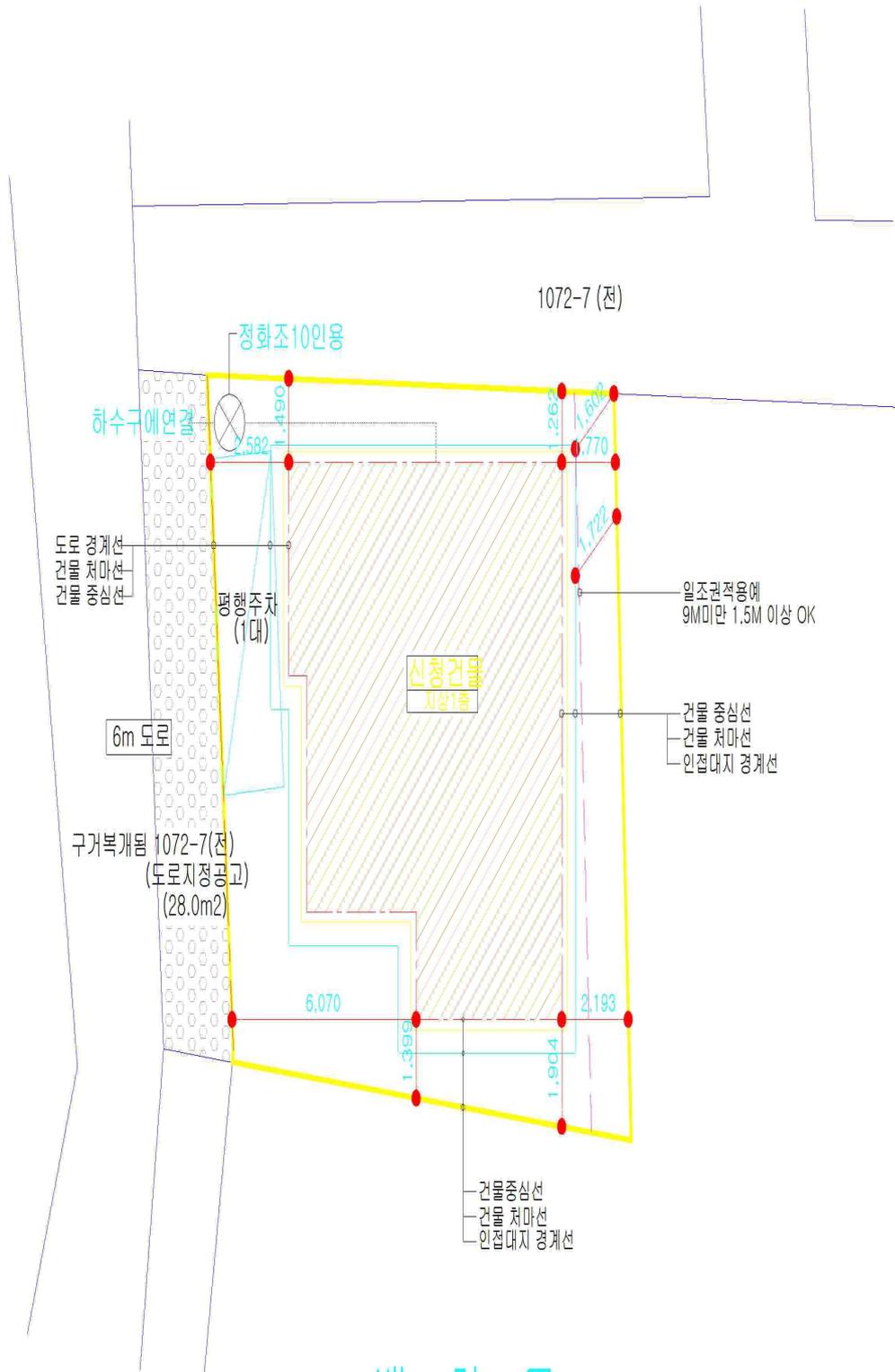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061-659-4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4. 15.

여 수 시 장



배치도

축척: 1/150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 시 에서 시행하는 『문수주택단지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16.

여 수 시 장 (인)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문수주택단지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사 업 량 : 도로L=288m , 주차장 3475㎡ , 공원2338㎡

2. 열람공고기간 : 2019. 4. 16. ~ 4. 30. (15일간)

3.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여수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여수시 도시계획과에 문수동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및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재(www.yeosu.go.kr)

4.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 감정평가→ 보상금액통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계약체결→ 보상금 지급

나. 보상평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산정)에 따라 3인(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2인)이상의 감정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 가 결정

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면적의 1/2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의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라. 보상금이 산정되면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시기 · 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기재하여 별도 문서 통지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할 예정임

6. 기 타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의거 본 공고로 같음하며,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05)로 문의바랍니다.

「여수형 청년 마을기업가」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교육 및 사업비용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는 『여수형 청년 마을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19. 4. 16.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2019년도 「여수형 청년 마을기업가」 육성사업
2. 사업기간 : 2019. 5.~2019. 12.
3. 사 업 비 : 19,200천원
4. 사 업 량 : 1명(팀) * 팀별 19,200천원 이내
5.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미취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이어야 함
 - 최종 선정 후 여수시에 창업이 가능한 만 39세 이하('19. 1. 1. 기준)의 청년
 - 사업기간 동안 사업추진에 필요한 의무교육 등의 이수가 가능한 자
 - 5인 이상 팀 구성 시 구성원 1/2이상이 청년(만 39세 이하)이고 나머지는 지역주민이어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충족 요건(예시) > * 청년 50% 이상, 지역주민 50% 이상 동시 충족

- ▶ 출자자(회원)가 5명인 경우: 청년 3명 이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 지역주민인 청년 3명, 청년이 아닌 지역주민 2명인 경우 → 청년 3명, 지역주민 5명으로 충족
 - 지역주민인 청년 1명, 지역주민이 아닌 청년 2명, 청년이 아닌 지역주민 2명인 경우 → 청년 3명, 지역주민 3명으로 충족
- ▶ 출자자(회원)가 7명인 경우: 청년 4명 이상 & 지역주민 4명 이상
- ▶ 출자자(회원)가 10명인 경우: 청년 5명 이상 & 지역주민 5명 이상

6. 신청제외대상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가.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및 개인.
- 대표자가 이해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
- 과거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및 개인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7. 사업선정 :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공동체 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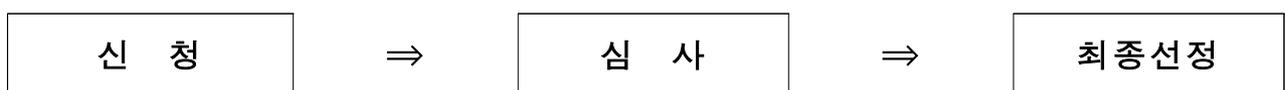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창출형 주민 공동체 사업
- 지역특산물 및 자연자원 활용사업, 자연 생태관광 사업,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등

8. 선정방법 : 여수시 마을기업 육성 심의위원회 선정

9. 지원내용 : 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준비 등

- 지원액 : 1명(팀) 당 19.2백만원 이내 지원

10. 신청절차



11. 신청서 접수 및 추진일정

- 공모기간 : 2019. 4. 16.(화)~2019. 4. 23.(화)
- 접수기간 : 2019. 4. 16.(화)~2019. 4. 23.(화)

- 접수처 :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지역공동체팀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오림동 진남체육공원)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택배·인터넷 접수 불가)
- 심사 및 선정 : 접수기업에 한하여 별도 통보

※ 중복지원 제한 안내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 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지원 가능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 지원 종료) 2년 경과 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12. 신청서식

- 가. 여수형 청년 마을기업가 사업 신청서 【서식 1】
- 나. 여수형 청년 마을기업가 사업 계획서 【서식 2】
- 다. 여수형 청년 마을기업가 회원명단 【서식 3】

○ 신청시 제출 서류

2. -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청년 마을기업가회원 명단(서식 3),
3. - ④ 법인등기부등본(제출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 정관,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4. ⑦ 통장사본
5.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6. - 첨부서류 3~8까지는 해당할 경우 제출

13. 문의처 :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 (061)659-3598

여수형 청년 마을기업가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주체 :
 -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
(예> 귀농인이 80%,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
- 사업내용 : 공공성,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
 -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 내용 기재
(예> 지역특산품 생산 및 유통을 통한 부가소득 창출)
-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 누구인지, 어떠한 일자리인지, 몇명 인지 드러나게 작성
- 수익금 활용계획 : 수익금의 몇 %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방안(금액환산)이 반드시 포함될 것

4.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

5. 예산 계획

○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자부담은 필요시 작성

○ 자원조달 및 예산 사용 계획

(가) (단위 : 천원)

세부 항목		산출근거	금액	비율
간접 사업비	교육 및 멘토링	의무교육 및 멘토링 등 (A)	2,850	15%
직접 사업비	운영 경비	일반수용비		
		역량강화비		
		활동비		
		소 계 (B)		
	사업 모델 개발비	상품화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리스, 임차 (원칙)	
소 계 (C)				
합 계 (D)		A + B + C	19,200	100%

(나)

- ☞ 항목은 선택적으로 기입가능하며, 사업비 구성 관련 허용 및 제한에 대한 상세 내용은 마을기업 비목 별 계상 기준 및 사업비 회계처리기준 참조하여 작성
- ☞ 간접사업비(교육 및 멘토링)는 신청서 제출 시에는 2,850천원으로 작성하되 이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시 변경될 수 있음
- ☞ 기자재구입은 임차 또는 리스를 원칙으로 하며, 1년간 임차 또는 리스료가 구입비보다 큰 경우 장비 구입 가능. 단, 지원된 국비(창업지원비 중)의 50%(3,750천원)를 초과하는 경우 행안부와 별도 협의 하여야 함(행안부 지침 의거)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1. A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B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6.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19년~2021년)

※ 해당 계획은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 할것

○ 2019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20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21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7. 청년 마을기업가 특성

○ 홍보·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

- 예> 국토마트에 연 3,000개 납품 계약,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	--

※사업장이 있을 경우 작성

【서식 3】

※ 임의 항목 삭제 금지, 필요시 가로 편집 가능

청년 마을기업가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대표자 와의 관계	정보 제공 동의 여부	사업계획 동의 여부
1								○	친필 서명
2								○	친필 서명
3								○	친필 서명
4								○	친필 서명
5									친필 서명
6									친필 서명
7									친필 서명
8									친필 서명
9									친필 서명
10									친필 서명
합계									

※ 해당될 경우 작성

위와 같이 청년 마을기업가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마을기업 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19. 4.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4】

①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동의

여수시는 2019년「여수형 청년 마을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수시 「여수형 청년 마을기업가 육성사업」담당부서(지역공동체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여수형 청년 마을기업가 육성사업」지원자들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신청자격 검토, 평가, 협약(계약)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사업정보 안내, 자원연계, 사후지원 등)을 위함

<수집 또는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여수형 청년 마을기업가 육성사업 참가팀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선택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위, 전공, 최종학력, 담당업무, 주요업무수행능력, 자격증, 기술등급

* 선택항목: 개인정보 제공자는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 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불이익 고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필수항목)을 거부할 경우「여수형 청년 마을기업가 육성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협약체결 및 선정 이후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여수시는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조회, 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항목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선택항목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여수시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신청자격 검토(중복지원 확인 포함), 제재사항 해당 여부 확인, (예비)마을기업 지원 등의 목적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

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타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권역별 마을기업 지원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제재사항 해당 여부 확인
- 권역별 마을기업 지원기관: (예비)마을기업 인증 지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추진 사업명, 추진 사업 내용
- 권역별 마을기업 지원기관: 성명, 이메일주소, 추진 사업명 및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관>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신청일로부터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권역별 마을기업 지원기관: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불이익 고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경우 「여수형 청년 마을기업가 육성사업」자격 검토 및 평가, 창업지원사업 중복지원검토, 사업운영지침상의 제재사항 해당 여부 확인, 협약 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여수시는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_____ (인)

※ 대표자 포함 팀 구성원 모두 작성, 개인별로 1부씩 작성·제출

□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예산 계획 시 참고) * 지침 48p**

- ❖ 해당 비목 내 금액조정은 기초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마을기업 내부 품의를 통해 조정 가능
- ❖ 비목 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새로운 비목을 신설해야 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 변경 검토 후 승인해 주어야 함

□ **회계비목 현황**

○ '19년부터 e나라도움시스템 보조금 비목으로 변경

보조비목 코드/명	보조세목코드/명	세부항목 및 설명	
[110] 인건비	[01]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04] 일용임금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총사업비 20% 이하 편성
	[05] 기타인건비	강사료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기타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2. 인쇄비 및 유인비	책자, 전단,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현수막, 간판 등 홍보용 물품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기타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6. 공고료 및 광고료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7.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 컨설팅 비용
		[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07] 임차료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차료는 총사업비의 20% 이하 편성
	[09] 시설장비유지비	1. 건물 및 건축설비(건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11] 재료비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식물 및 종자, 포장용기 등 포함)	총사업비 20% 이하 편성
[420] 건설비	[03] 시설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설계비 사용여부 가능 (공사비의 4% 미만)
		2.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시설비의 경우 공사에 직접 소용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제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편성(별도 편성 불가)

<p>[430] 유형자산</p>	<p>[01] 자산취득비</p>	<p>1. 건물 및 대규모 기계, 기구, 파랑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 기구 비품 3.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4.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집기류의 구입비</p>	<p>마을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며, 한시적(1~2개월)으로 필요한 물품은 가급적 단기 임대 활용</p>
-----------------------	-------------------	--	--

□ 회계비목별 집행기준 및 증빙서류

< 인건비 - 보수, 일용임금, 기타인건비 >

① 보수, 일용임금

- 인건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마을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보수, 일용임금, 기타인건비로 구분하여 지급
 - ※ 사업비로는 마을기업 대표, 부회장, 총무 등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 감사 등 임원에게 수당 지급 불가하나, 마을기업 자금으로는 지급 가능
- 인건비의 지급은 약정체결 시 제출하는 사업 실행 계획서에 따라야 함
 - ※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계좌이체영수증, 급여대장, 업무일지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제출 제외
- 인건비 중 보수 및 일용임금은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가능

② 기타인건비

- 기타인건비는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강사비를 말하며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가능, 마을기업 임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강사비 지급 시 교통비 별도 추가 지급은 불인정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을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강의자료 등 유인물 사본 및 강의 사진 등 증빙자료 구비
- 강사비 지급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18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함

< 운영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

① 일반수용비

가. 사무용품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 물품 관련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나.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 광고료 및 광고료

- 마을기업 홍보 관련 인쇄물(홍보물, 현수막, 광고료 등) 제작에 대한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다.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액 소모품 관련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라. 전문가 활용비

- 마을기업 운영 및 제품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급을 위한 항목
- 전문가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컨설팅 내용 및 컨설팅비용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을 첨부(컨설팅 시간 기재 필수)하고, 컨설팅 결과 자료 등 유인물 사본 및 사진 등 증빙자료 구비
- 컨설팅 비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18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함

② 공공요금 및 제세

- 사업장 운영관련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③ 임차료

-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시설, 장소, 장비 등 임차에 관한 지출 경비
- 임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임차물 자료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 임대업체(법인)와 계약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증빙 자료로 구비
- 임차비 중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용은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가능

④ 시설장비유지비

- 사업장 및 시설장치 유지 및 수선 관련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⑤ 재료비

- 판매 제품의 원료 및 부자재로 사용되는 생산 재료에 대한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생산 재료 구입처가 사업자를 등록한 업체가 아닌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①재료판매 확인증(판매자 주소, 전화번호 포함) ②구입재료 관련사진 첨부
-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가능

< 건설비 - 시설비 >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공사 및 시설설치와 관련된 지출 경비
- 시공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공사자료 (시행 전 및 시행 후의 공사 과정을 사진으로 첨부)를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유형자산 - 자산취득비 >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기계·장비 등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품 구입 비용
(소액으로 소모성 물품은 일반수용비의 소모품비로 지출)
- 구매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취득한 물품의 사진을 첨부
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사업비 총액(보조금+자부담)대비 기타 항목이란?

- '일반수용비' 중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 '공공요금 및 체세'

◇ 유형별 인정 한도액

- | | |
|---------------------|-----------------------|
| - 신규마을기업(60백만원일 경우) | 전체 사업비의 3.0%(180만원까지) |
| - 재지정(36백만원일 경우) | 전체 사업비의 3.0%(108만원까지) |
| - 고도화(24백만원일 경우) | 전체 사업비의 3.0%(72만원까지) |

□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18년 지침 준용)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40	30(20*) (시간보상수당 30)
특2급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	20 (시간보상수당 20)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25	12 (시간보상수당 12)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가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13	8 (시간보상수당 8)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8	5 (시간보상수당 5)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7	4 (시간보상수당 4)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5	3 (시간보상수당 3)

-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3. “공직자 등”이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4. 시간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 (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7.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기준	대상	지급액
1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7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대학의 교수	최초 1시간 16만원 초과 매시간 11만원
2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5급(상당)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최초 1시간 14만원 초과 매시간 9만원
3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미만 경력자	최초 1시간 12만원 초과 매시간 7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강사로 지급

다.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라.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급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주) 1.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분	기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30% 지급 미지급

○ 여비 지급기준(강사 및 전문가 수당 지급시)

국내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지 내(20Km 이내, 4시간 이하) - 근무지 내(20Km 이내, 4시간 초과) - 근무지 외(20Km 초과) - 식비(1인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원 - 20,000원 - 실비정산 - 8,000원 	토·일요일, 공휴일 숙박비는 기준단가의 20% 초과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비(1인 1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 *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국외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정산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 월 16 일

여 수 시 장

권 2



여수시 조례 제1393호

붙임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수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건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건설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
3.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추진 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5. 유물의 수집·제작·보존·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6. 홍보 및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립박물관 건립 업무의 주무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여수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하여 박물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각각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연구 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여수시립박물관 개관일 전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재능
기부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 월 16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인



여수시 조례 제1394호

붙임 여수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1부.

여수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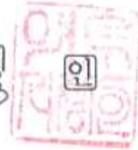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 월 16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여수시 조례 제1395호

붙임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1부.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장애인등”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4. “무장애(Barrier Free)시설 인증”이란 장애인등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3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하며, 시민인식 개선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관련단체·전문가·기관 등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수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제7조에 따른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수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
2. 무장애 시설 조성 및 확충계획
3. 추진 사업 목록
4.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시민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에 1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상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이하 “시설주”라 한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무장애 시설 인증) ① 시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장애 시설 인증 신청
시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장애 시설임을 인정하는 표식을
발급한다.

② 시설물에 대한 인증신청은 시설주가 할 수 있다.

제8조(실적평가)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수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 무장애도시 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같은 항 제
1호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도시계획·건축·토목·조경·교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등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요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무장애 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

장애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부진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개인, 단체 등을 시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6일

여수시장 권오봉



여수시 조례 제1396호

붙임 여수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여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5.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말한다.
6. “피해자”란 아동·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의 예방, 피해자 보호, 유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장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한 경우 지원금의사용 내역을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 받아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치료하기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지원기관 및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장 여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설치 등

제7조(지역연대 설치 등)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여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연계와 자원정보 교류기반 마련
3. 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4.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5. 그 밖에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으로도 위촉할 수 있다.

1. 아동·여성안전 관련 업무담당국장
2. 여수시의회 의원
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기관 또는 시설의 장
4. 아동보호기관 또는 시설의 장
5. 청소년상담 지원시설의 장
6. 가족지원시설의 장
7.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8. 교육지원청, 대학, 연구소 등 교육·연구기관의 장
9.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의 장
10. 지역주민 대표
11.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제3호.제4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을 포함하되 제3항 각 호 유형 중 최소 5개 유형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5.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 안전망 구축사업
6. 실무협의회에 부치는 사안의 심의·의결·조정
7. 그 밖에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사임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등 장기치료를 위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13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실무사례협의회 구성) ① 실무사례협의회는 제8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하되,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아동·여성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② 실무사례협의회원은 실무업무의 특성과 업무연속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임기를 두지 아니한다. 다만, 실무사례협의회원이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실무사례협의회 업무)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개별사안의 개입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16조(실무사례협의회 회의) ① 실무사례협의회 회의는 개별사안이 발생한 때 개최하며, 실무사례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실무사례협의회장은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하고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지역연대의 운영, 아동·여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19년 4월 16일

여수시장 권오봉 인 

여수시 조례 제1397호

붙임 여수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 대상)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한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 배출업소

제3조(공개 방법) 시장은 시보·시 홈페이지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공개 시기) 시장은 제3조에 의한 공개사항을 행정처분 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 월 16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병 

여수시 조례 제1398호

붙임 여수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 조성과”를 “환경을 조성하고”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체를 지원할”을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을 “건강증진을 위하여 법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박람회 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
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수욕장
6. 시장이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거리 또는 특화 거리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연구역 해제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금연구역 해제의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이하 “표지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 ② 표지판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2. 과태료 부과 등 위반 시 조치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을 “표지판등”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제목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을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단체”를 “민간단체, 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을 “시민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는”으로, “범위 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을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경우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금연 관련 법령
2. 금연의 필요성
3. 금연지도원의 자세
4. 금연지도원의 직무
5. 그 밖에 금연지도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제목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을 “(금연활동 자원봉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연홍보활동”을 “금연 홍보활동”으로,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금연활동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금연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중 “공헌이 많은”을 “공헌도가 큰”으로 하고, “단체 등을 표창”을 “기관·단체, 금연지도원 및 금연활동 자원봉사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과태료)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4)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9)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u>환경 조성</u>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환경을 조성하고</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흡연"이란 <u>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u>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u>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u> 4. "흡연구역"이란 <u>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u>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흡연"이란 <u>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u> 2. "간접흡연"이란 <u>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는 행위를 말한다.</u>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u>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u>

<p>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u>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u></p>	<p>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 ----- <u>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u>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u>단체</u>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 ----- <u>단체</u> <u>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u>을 할 --.</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u>건강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를 <u>금연구역</u>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u>건강증진을 위하여 법 제9조제7항</u>----- ----- -----.</p>
<p>1. 「<u>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도시공원 및 「<u>주택법</u>」에 따른 어린이놀이터</p>	<p>1. 「<u>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p>
<p>2. 「<u>학교보건법</u>」에 의한 학교 <u>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u></p>	<p>2. 「<u>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u>」 제8조제1항제1호의 <u>절대보호구역</u></p>
<p>3.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p>	<p>3. 「<u>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u>」 제2조제1호의 <u>박람회 시설</u></p>

<p>4. <u>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u></p>	<p>4.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u>」 제2조에 따른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p>
<p>5. 『<u>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u>』에 따른 박람회지원시설</p>	<p>5. 「<u>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의 해수욕장</p>
<p>6. <u>그 밖의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u></p>	<p>6. <u>시장</u>이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거리 또는 특화거리</p>
<p>② <u>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u></p>	<p>② <u>시장</u>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p>
<p>③ <u>시장</u>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삭 제></p>
<p>④ 누구든지 <u>제1항</u>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 <u>제2항</u>----- ----- -----.</p>
<p>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생략)</p>	<p>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u></p>	<p>② <u>시장</u>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p>

<p><u>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u>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연구역 해제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금연구역 해제의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u></p>
<p><u>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u></p>	<p><u>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이하 “표지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과태료 부과 등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u></p>	<p><u>② 표지판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u> <u>2. 과태료 부과 등 위반 시 조치 사항</u> <u>3. 그 밖에 필요한 사항</u>
<p><u>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③ 표지판등-----</u> <u>-----</u> <u>-----</u> <u>-----.</u></p>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제

5조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 장소에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

<삭 제>

<p><u>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u></p> <p>3. <u>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u>민간단체 및</u> <u>각급 학교</u>에서 실시하는 <u>금연교육을</u> 지원할 수 있고,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u> <u>직접</u> <u>금연교육을</u> 실시할 수 있다.</p>	<p>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 ① -- <u>민간단체, 사업장</u> ----- ----- ----- ----- -----.</p>
<p>② 시장은 <u>금연교육 및 홍보관</u>을 <u>설치운영하거나</u> <u>건강증진사업</u>을 <u>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u>에게 <u>예산의 범위</u>에서 <u>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u>을 <u>위탁</u>할 수 있다.</p>	<p>② ----- <u>시민의 흡연을 예방</u>하고 <u>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u>활동을 실시하는 ----- ----- <u>범위에서 필요</u>한 <u>비용과 물품</u>을 지원----- -----.</p>
<p><신 설></p>	<p>③ <u>시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u> <u>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경우</u> <u>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u> <u>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u>을 실시해야 한다.</p> <p>1. <u>금연 관련 법령</u></p>

	<p>2. <u>금연의 필요성</u></p> <p>3. <u>금연지도원의 자세</u></p> <p>4. <u>금연지도원의 직무</u></p> <p>5. <u>그 밖에 금연지도에 필요한 사항</u></p>
<신 설>	<p>④ <u>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u></p>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u>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제10조(금연활동 자원봉사자) ① ----- <u>금연 홍보활동</u> ----- ----- <u>금연활동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u> ----- ----- -----.
② <u>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금연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③ <u>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u>	③ ----- ----- <u>공헌도가 큰 시민, 기관·단체, 금연지도원 및 금연활동 자원봉사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u> -----

	-
<p>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 제1항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p>제11조(과태료)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4)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9)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 월 16 일

여 수 시 장 권 2



여수시 조례 제1399호

붙임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1부.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고령운
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월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1399호

붙임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 1399 호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가진 반납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6일

여수시장 권오봉



여수시 조례 제1400호

붙임 여수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도로의 점·사용 허가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가로수 관련 시설 등을 이설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가로수의 규격이 근원경 20cm 또는 흉고직경 18cm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가로수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2천만 원 이하 공사는 조경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도시림등 조성으로 등록된 여수시 관내 업체를 선정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조경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도시림등 조성으로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 및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6조(비용부담) ①~②(생략)</p> <p>③ 도로의 점·사용 허가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를 <u>이식 또는 이설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로수의 규격이 근원경 20cm 또는 흉고직경 18cm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가로수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시에 위치한 조경관련업체를 통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다.</u></p> <p>이 경우 하자 및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p>	<p>제16조(비용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도로의 점·사용 허가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를 <u>이식하거나 가로수 관련 시설 등을 이설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가로수의 규격이 근원경 20cm 또는 흉고직경 18cm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가로수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2천만원 이하 공사는 조경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도시림등 조성으로 등록된 여수시 관내 업체를 선정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조경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도시림등 조성으로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다.</u></p> <p>이 경우 하자 및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p>